

2023-2024
BCO AMENDMENTS SENT DOWN TO PRESBYTERIES
BY THE 50th GENERAL ASSEMBLY
FOR VOTING, and for ADVICE AND CONSENT

NOTE: The Stated Clerk's Office sends the proposed amendments only in their final form, as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ITEM 1: Amend BCO 7-3, regarding titling of unordained people, by the addition of a sentence (underlined).

[Overture 26 wa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as amended by the Overtures Committee.]

7-3. No one who holds office in the Church ought to usurp authority therein, or receive official titles of spiritual preeminence, except such as are employed in the Scripture. Furthermore, unordained people shall not be referred to as, or given the titles of, the ordained offices of pastor/elder, or deacon.

ITEM 2: Amend BCO 8-2 and 9-3, to require officers' conformity to Biblical standards for chastity and sexual purity in self-description, by the addition of the underlined wording.

[Overture 23 from Mississippi Valley Presbytery wa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as amended by the Overtures Committee. (Overtures 9, 16, 17, and 24 were answered with reference to Overture 23.)]

8-2. He that fills this office should possess a competency of human learning and be blameless in life, sound in the faith and apt to teach. He should exhibit a sobriety and holiness of life becoming the Gospel. He should conform to the biblical requirement of chastity and sexual purity in his descriptions of himself, and in his convictions, character, and conduct. He should rule his own house well and should have a good report of them that are outside the Church.

9-3. To the office of deacon, which is spiritual in nature, shall be chosen men of spiritual character, honest repute, exemplary lives, brotherly spirit, warm sympathies, and sound judgment, conforming to the biblical requirement of chastity and sexual purity in their descriptions of themselves and in their convictions, character, and conduct.

2023-2024

제 50 차 총회가 각 노회로 내려 보내어
표결, 조언 및 동의를 구하는 헌법 수정안들

주: 서기 사무실은 제안된 수정안들을 총회가 승인한 대로 그 최종 형태로만
발송합니다.

1번항: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의 호칭에 관한 헌법 7-3을 아래 밑줄 친 문장을 추가함으로
수정합니다.

[헌의안 26은 헌의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7-3.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로 인해 월권해서는 안 되며, 성경에서
사용된 칭호 이외에 직분에 대한 어떤 영적 존칭을 받아서도 안 된다. 더 나아가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을 안수 직분인 목사, 장로, 혹은 집사라고 부르거나 이러한
칭호를 주어서는 안 된다.

2 번항: 헌법 8-2 와 9-3 을 수정하여 직원들이 자기 소개에 있어서 정절과 성적 순결에 대한
성경적 기준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 밑줄 친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헌의안 23은 미시시피 벨리 노회가 제안한 것으로 헌의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헌의안 9, 16, 17, 그리고 24도 헌의안 23을 참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8-2. 이 직분을 맡은 사람은 인간의 지식에 어느 정도 능통하며, 흠 없는 생활을 하며,
믿음이 건전하며,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온건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야만 한다. 그는 자기 소개와 자기 신념과 성품과 품행에 있어서
정절과 성적 순결에 대한 성경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교회 밖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아야 한다.

9-3. 집사직은 본질이 영적인 것이므로, 신령한 성품, 정직하다는 평판, 모범적인 생활,
형제 우애 정신, 따뜻한 동정심과 건전한 판단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되어야
한다.으며, 자기 소개와 자기 신념과 성품과 품행에 있어서 정절과 성적 순결에 대한
성경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ITEM 3: Amend BCO 38-1, regarding confessions and offended parties, as follow (strike-through for deletions, underlining for new wording).

[**Overture 27** from Pacific Northwest Presbytery wa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as amended by the Overtures Committee.]

38-1. When any person shall come forward and make his offense known to the court, a full statement of the facts shall be recorded and judgment rendered without process. In handling a confession of guilt, it is essential that the person intends to confess and permit the court to render judgment without process. Statements made by him in the presence of the court must not be taken as a basis of a judgment without process except by his consent. In the event a confession is intended, a written Confession (i.e., a sufficient summary of the facts, the person's specific confession, and any expression or evidence of repentance) must be approved by the accused, and by the court, before the court proceeds to a judgment, and the co-signed document shall be appended to the minutes (regular or executive session). No other information may be presented without written consent from the accused and the court, and this prohibition includes individuals, prosecutors, committees, and commissions. A censured person has the right to appeal (*BCO 42*). The person has the right to be assisted by counsel at any point, in accord with the stipulations of *BCO 32-19*. [See Stated Clerk's note below.]

In any instances involving a personal offense (*BCO 29-3*), the court shall attempt to inform the offended person(s) of that part of the Confession the court deems pertinent to the offense against him or her. The court shall invite the offended person to provide the court comment on the Confession prior to final approval of the Confession by the confessor and the court. The court shall encourage the offended person to enlist the help of an advisor in preparing any such comments. In all instances, the court shall report the way such offended persons were informed of the parts of the Confession pertinent to them.

[**Stated Clerk's Note:** The last two sentences in paragraph one above are necessary because the 50th GA Overtures Committee adopted wording prior to the 50th GA's adopting Items 9 and 10 of the Amendments Sent Down to Presbyteries by the 49th GA, thereby amending the same section of the *BCO*. See below, note 7 of the Rationale accompanying Overture 27.]

Rationale #7 from Overture 27 to 50th GA:

7. Note: The 49th GA approved two amendments to *BCO 38-1* and sent them to presbyteries for a vote. As of April 11, 2023, presbyteries had voted 77-1 & 78-0 in favor. If the 50th GA in Memphis also approves them, then the current final sentence in *BCO 38-1* ("*The accused person has the right of complaint against the judgment*") will be revised to read: "A censured person has the right to appeal (*BCO 42*)." And an additional sentence will be added after it: "The person has the right to be assisted by counsel at any point, in accord with the stipulations of *BCO 32-19*." These two new sentences would not be touched or affected by this Overture.

3 번항: 헌법 38-1 은 자백과 피해 당사자들에 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최소선은 삭제, 밑줄 친 부분은 추가하는 것임).

[헌의안 27 은 퍼시픽 노스웨스트 노회의 제안으로 헌의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38-1. 어떤 사람이 치리회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릴 때는 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 죄의 자백을 다룰 때, 당사자가 [죄를] 고백하고 치리회가 [재판] 절차없이 판결을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치리회 앞에서 자백한 그의 진술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재판] 절차없이 판결의 근거로 채택될 수 없다. 자백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치리회가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 하기 전에, 서면 자백 (즉, 사실에 대한 충분한 요약, 그 사람의 특정한 구체적인 자백, 또 무엇어든 회개에 대한 모든 표현 혹은 증거)가 반드시 피고와 치리회에 의해서 승인되어야 하고, 또 공동으로 서명된 문서가 (정기 혹은 임원회의) 회의록에 첨부되어야만 한다. 피고와 치리회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다른 아무 정보도 제출 될 수 없고, 이 급지는 개인들, 기소자들, 위원회들과 전권위원회들을 포함한다. 책벌을 받은 사람은 상소할 권리가 있다 (헌법 42). 그 사람은 헌법 32-19 의 규정들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라도 변호인이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아래 서기의 설명을 보시오.]

개인적인 범죄가 포함된 어떤 경우에도 (헌법 29-3), 치리회는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 자백에서 그 사람(들)이 당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부분을 공지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치리회는 그 자백이 자백한 사람과 치리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되기 전에 피해를 당한 사람을 초청하여 그 자백에 대하여 치리회에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치리회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 진술을 준비하는데 있어 자문의 도움을 얻도록 권고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치리회는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그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관하여 어떻게 공지를 받았는지 보고해야 한다.

[서기의 주: 첫 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이 필요한 이유는 제 49 차 총회가 노회에 보낸 9 번과 10 번 수정안들을 제 50 차 총회가 채택하기 전에 제 50 차 총회의 헌의 위원회가 사용한 표현이었고, 따라서 헌법의 동 조항을 수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헌의안 27 을 따르는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제 50 차 총회에 보낸 헌의안 27 설명 #7:

7. 주: 제 49 차 총회가 헌법 38-1 에 대한 두 수정안을 승인하여 노회들에게 표결을 위해 보냈습니다. 2023 년 4 월 11 일 현재, 노회들은 77-1 과 78-0 으로 가결했습니다. 멤피스에서 열릴 제 50 차 총회 역시 이들을 승인하면 현재의 헌법 38-1 의 마지막 문장(“피고는 판결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다.”)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책벌을 받은 사람은 상소할 권리가 있다 (헌법 42). 그리고 그 뒤에 한 문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헌법 32-19 의 규정들에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라도 변호인이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